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5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장철민 · 이건태
임미애 · 박 정 · 김남근
김병주 · 소병훈 · 김동아
이재정 · 허 영 · 김문수
백승아 · 김현정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이직 · 퇴직이 증가할 수 있음.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 ·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이에 따른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, 의료기관의 종류별

특성, 보건의료인별·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
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
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6 신설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6(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그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(이하 “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안전,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, 보건의료인력별·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은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등에

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⑥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6(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·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그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(이하 “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안전,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, 보건의료인력별·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은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⑥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